

『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호국·보훈정신을 고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(안 제4조)
 - 당초 : 월 7만원 → 변경 : 월 8만원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.25전쟁,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타 시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과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